

동두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53
------------	------

제출연월일 : 2003. 1. .

제 출 자 : 동두천시장

1. 제안이유

동 조례에서 미술장식품설치계획에 관한 심의를 동두천시건축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두천시건축위원회의 위원 20명중 미술전문가는 2명에 불과하고 위원의 대부분이 건축사로 구성되어 있어 미술장식품의 심도 있는 심의에 어려움이 있어 미술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미술장식품의 설치에 대한 심의를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미술장식의 가격, 미술장식의 예술성,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등으로 정함(안 제8조).

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등의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정함(안 제9조).

라.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촉,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내지 제15조).

동두천시조례 제 호

동두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동두천시건축위원회”를 “동두천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 (이하 “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조 내지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영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가
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8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장식의 가격
2. 미술장식의 예술성
3.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4.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5. 기타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등

제9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공보과장, 도시과장

2.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문화공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은 본인 또는 그 동거가족 및 배우자가 제작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미술장식품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 수행이 어려운 때
2. 미술장식품의 심의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심의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문화예술담당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고,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4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두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 (미술장식의 설치) ① (생략)	제3조 (미술장식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 신청시 시장에게 별지서식에 의한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u>동두천시건축위원회</u> 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 ----- ----- <u>동두천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u> (이하 " <u>심의위원회</u> "라 한다) -----
(신설)	제7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영 제24조의 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제8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u>미술장식의 가격</u> 2. <u>미술장식의 예술성</u> 3. <u>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u> 4. <u>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u> 5. <u>기타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등</u>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1조(회의) ①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은 본인 또는 그 동거가족 및 배우자가 제작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미술장식품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 수행이 어려운 때 2. 미술장식품의 심의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현행	개정안
(신설)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심의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문화예술담당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고,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신설)	제14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두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